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29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박균택・박 정・서영교

김현정 • 허 영 • 박정현

김태선 · 장경태 · 이재정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임명은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은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판관의	임명)	1	(생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현행과
략)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 후단의 임명은 국회
				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은 그 임명을 거부할 수
				<u>없다.</u>
② ~ ⑤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6}$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